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1999. 9. 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8월 10일

○ 회부일자 : 1999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9. 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차 주 영)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 신청은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하고(안 제7조), 판매인 명의 및 판매소 위치변경, 판매 폐지 신고, 승계신청은 10일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5일전까지 하도록 완화하였으며(안 제11조)

판매인 결격요건(안 제8조), 인감계 제출(안 제9조), 표찰게시 의무(안 제10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폐지, 또는 완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입증지 판매인) ①수입증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

제7조중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③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책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판매인 신고등) ①수입증지를 판매(이하"판매인"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지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장금고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판매인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2항중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를 "5일전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명중 "지정의 취소"를 "폐지신고의 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신고를 수리"로 한다.

동조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10일이내"를 "5일이내"로 하고, "지정을 신청"을 "신고서를 제출"로 한다.

제23조중 "별표1의" 를 "별표의"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제16조제5항의" 를 "제19조의"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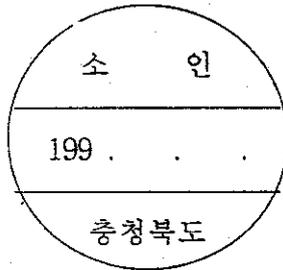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과 제2호서식,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한다.

(별표)

소인인 규격(지름 2.5c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p> <p>②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수입증지 판매인) ①수입증지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p> <p>②(삭제)</p> <p>②.....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신고수리할</p> <p>③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p>
<p>제8조(판매인의 결격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도록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제8조(삭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9조(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직장급고가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급고 이사장, 직원 공제회장 등 직원 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의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급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을 자의 인감계를 첨부 하여야 한다</p> <p>③(삭제)</p> <p>④도지사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시·군명을 도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조(판매인 신고등) ①수입증지를 판매(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증지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직장급고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급고 이사장, 직원 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 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④도지사는 판매인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2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 하여야 한다.</p> <p>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u>10일전</u>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u>10일전</u>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u>5일전</u>에 <u>신고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5일전</u>에</p>
<p>제13조(지정의 취소) ①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u>지정을 취소</u>하여야 한다</p> <p>②<u>지정판매인</u>이 이 조래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제13조(폐지신고의 수리) ①..... 그 <u>신고</u>를 수리.....</p> <p>②<u>판매인</u>이</p>
<p>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u>10일</u>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u>지정</u>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4조(판매인의 승계)..... <u>5일</u>이내..... <u>신고서</u>를 제출.....</p>
<p>제23조(증지의 소인)증지를 소인할 경우에는 <u>별표1</u>의 소인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p>	<p>제23조(증지의 소인) <u>별표</u>의</p>
<p>제25조(증지의 환매)③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u>제16조 제5항</u>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p>	<p>제25조(증지의 환매)③..... <u>제19조</u>의</p>